

서울동부지방법원 2021. 3. 12 선고 2020가단11336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세계

담당변호사 김정남

피 고 B 조합

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우원

변론 종결 2021. 2. 5

판결 선고 2021. 3. 12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1. 소외 C과 피고 사이에 체결한 별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채권을 양도하고, 이에 관하여 소외 주식회사* D에 채권 양도통지하라.

이 유

1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2018. 9. 5. E 주식회사에 1억 5,000만 원을 대여하였고, C은 E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.

그런데 C은 2018. 10. 24. 채무초과상태에 서 주식회사 D, 피고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경기도 가평군 F, 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에 관하여 주식회사 D에 신탁하고, 우선수익자를 피고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사해신탁으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우 선수익권 채권의 양도 및 양도 통지를 구한다.

2. 판단

갑 제3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원고가 2018. 9. 5. E 주식회사에 1억 5,000만 원을 변제기 2018 . 12. 31., 이자 연 4%로 정하여 대여하였고, C은 E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, 원고가 2018. 10. 24. 주식회사 D과 사 이 에 원고 소유의 경기도 가평군 F, 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수탁자를 주식회 사 D, 우선수익자를 피고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(이하 '이 사건 신탁계약'이라고 한다)을 체결하고,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D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친 사실이 각 인정된다.

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조실